

시민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3.11. 5 내규 제260호

개정 2015. 3. 4 내규 제28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감사규정의 제12조의 4의 시행과 관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함)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공단 조성과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4)

제2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란 공단이 시행 중인 옴부즈만 대상사업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옴부즈만 대상사업”이란 기준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직무활동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회의) ①옴부즈만은 3명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개정 2015.3.4)

②옴부즈만 활동 중 전원이 모여서 협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 회의를 총괄한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옴부즈만 자격 및 위촉)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된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2. 공기업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된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3.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기·전자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공단사업 관련분야의 조교수이상으로 재직된 자(개정 2015.3.4)
 5.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제1항에 따른 위촉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연임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옴부즈만은 위촉시 기준 제13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옴부즈만의 해촉으로 공석시 옴부즈만 보궐위촉하고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 후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만의 직무활동) ①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목표는 옴부즈만 대상사업의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둔다.

②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부서의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 또는 입회
 2. 발주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 감시평가
- 가. 다음 사업 중 옴부즈만 선정 사업(서울시 옴부즈만 대상사업 제외)

- 1) 공사 : 총공사비가 5억 이상
- 2) 용역 : 1억원 이상
- 3) 물품 : 3천만원 이상

나. 협상에의한 계약(수입계약 포함)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옴부즈만 선정사업
다.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3. 옴부즈만 대상사업 계약관련 외부위원 선정, 심사, 평가, 협상 등 입회 감시
4. 옴부즈만 대상사업 계약관련 민원사항 검토 의견 표명
5. 옴부즈만 대상사업 공사현장 등 현장방문 감시 활동
6. 옴부즈만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참여
7.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③옴부즈만은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감시평가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의견 표명, 개선, 권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옴부즈만 직무활동과 관련 옴부즈만에게 입회 등 감시평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활동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서울시 또는 기타 행정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활동기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한다.

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건의 등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10조(옴부즈만 의견표명 등) ①옴부즈만은 감시평가활동 결과 의견표명, 시정, 개선,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에 제시한다.

②감사실은 각 분기별 등 옴부즈만 활동 후 권고사항 등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부서 등에 그 처리를 요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요구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해당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실에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감사실에 통보하고 당해 사업에 대해 해당 옴부즈만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4.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3조(비밀엄수)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옴부즈만은 위촉시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 한다.

제14조(수당) 옴부즈만 직무활동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표옴부즈만의 요구(문서) 등에 따른 당초 예산범위를 초과한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시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운영계획)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4.)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축 장

(주소)

(성명)

공단 주요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발굴 개선을 위하여 귀하를 서울시설공단 시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지 제2호 서식]

시민참여 ombudsman 건의서

건명				
시민참여ombudsman	성명		전화	
	주소			
해당부서				
내용				
처리 의견				
상기 사항을 「서울시설공단 시민참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2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서약서

본인은 서울시설공단 시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시(해촉 이후 포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 옴부즈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울시설공단 시민참여옴부즈만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